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그동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지역사회 또는 시설에 있는 아동을 위한 후견인 선임 절차 상담이 여럿 있었습니다. 체육에 특기를 보인 한 아이는 친권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후원자와의 공식적인 협의를 위해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역시 친권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미국 견학 여행에 선발되어 여권 발급을 위해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공익법센터는 단지 법정대리인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아동의 당연한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보호시설 내 아이들의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하고,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에 대한 후견인지정허가 심판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설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또 현재 제도 안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통장개설, 의료수술, 여권발급, 아이의 학교생활 등의 문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아동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각종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시설에서 후견인 선임 절차를 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매뉴얼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는 절차와 친권자에 대한 친권 제한·상실 청구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근거법률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활용례가 거의 없고 규정상 허점도 있기 때문에 매뉴얼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후에 사례가 축적되면 보완·수정된 매뉴얼을 추가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시설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아이들도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매뉴얼 제작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동복지시설 등 여러 시설의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법적인 보호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제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본 매뉴얼에서 기술한 의견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독자적 견해이며, 일부 내용은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CONTENTS

들어가며	2
------	---

01

Part

서울 내 보호시설 얼마나 있나?

7

02

Part

보호시설 아이들에게 후견인이란?

13

Ⅰ. 후견인제도란 무엇인가요?	14
Ⅱ. 후견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7
1. 민법상 유언에 따른 지정후견인이란?	17
2. 민법상 선임후견인이란?	18
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란?	18
Ⅲ.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특별법으로	19

03

Part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21

Ⅰ. 아동복지시설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2
Ⅱ. 그렇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시설”에는 어떠한 시설들이 있나요?	23

04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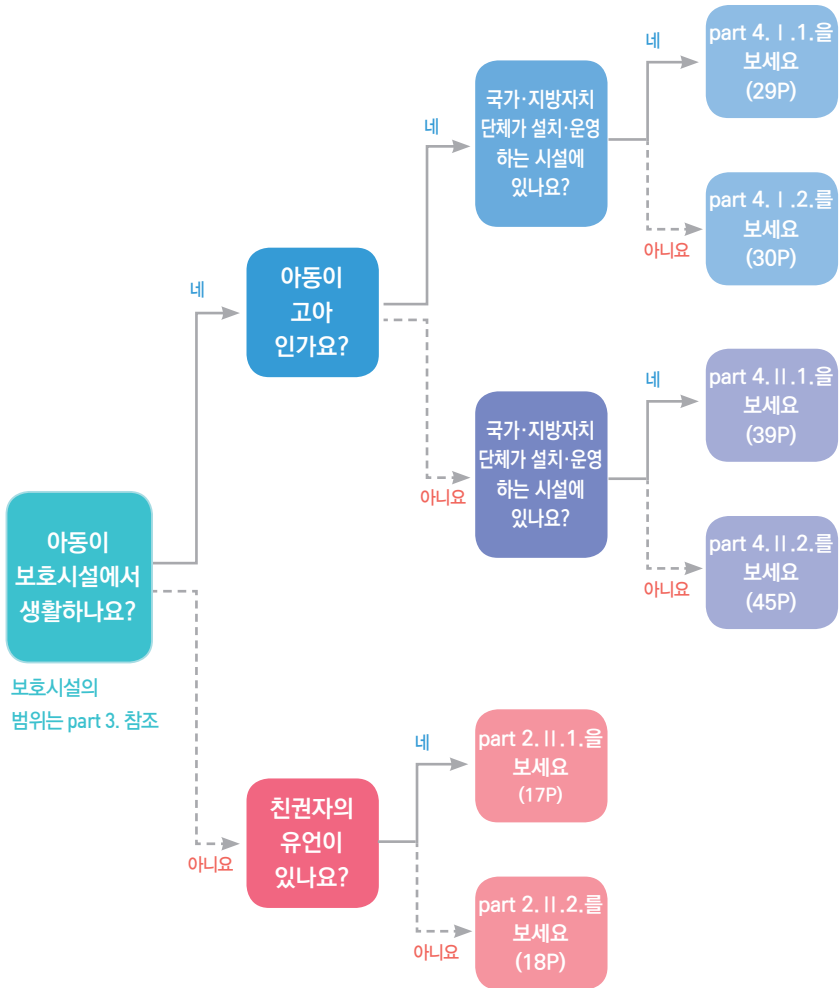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절차

27

Ⅰ.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29
1.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29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0
Ⅱ.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39
1.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9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45

05 Part	후견인의 결격사유	55
06 Part	후견인의 지정취소	59
	Ⅰ.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61
	Ⅱ.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61
	1. 후견인 지정허가의 취소	61
	2. 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61
	3. 어디에 청구를 하나요?	61
	4. 심리 및 심판	61
07 Part	친권의 제한·상실	65
	1. 친권 제한 · 상실청구가 왜 필요할까요?	67
	2. 어떠한 경우 친권 제한 · 상실청구를 할 수 있나요?	68
	3. 청구의 요청	71
	4.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검사의 청구여부 결정	74
	5. 친권상실 · 제한의 직접청구	74
08 Part	향후 개선 과제	79
부록	각종 서식 및 관련 법령	85
	각종 서식	86
	관련 법령	92

이 책의 활용도!



Part 01

서울 내 보호시설 얼마나 있나?



Part 01

서울 내 보호시설 얼마나 있나?

아이들이 생활하는 대표적 보호시설로는 보육원으로 부르는 아동 양육시설과 부정적인 낙인을 막기 위하여 최근 늘고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이 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내 아동공동생활가정은 60개. 이 곳에서 312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지원시설을 제외한 아동복지시설은 서울시내 46개이며, 이 곳에서 2,892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2016. 12. 31. 기준).

아동복지시설에는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이 있습니다¹⁾.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일반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호·양육·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수의 아이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생활하고 있으며, 2004년에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아동복지시설이 존재하며, 3천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1)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호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만 아이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많은 곳에서 아이들이 생활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영유아거주시설에는 93명의 영유아가 생활하고 있으며(2016. 12. 기준), 영유아거주시설 외에도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쉼터의 경우 약 2백명의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으며(2016년 기준), 성매매피해자 청소년지원시설은 서울 시내에 5개소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많은 아이들에게 “후견인 지정”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정·현원 현황²⁾

2016. 12. 31 현재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현원)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8,222	13,689	16,188	12,448	643	485	367	230	799	356	225	170
서울	3,942	2,975	2,955	2,453	175	158	100	83	522	134	190	147
부산	1,529	1,242	1,485	1,214	0	0	29	24	15	4	0	0
대구	1,144	759	982	655	72	46	60	38	30	20	0	0
인천	679	571	629	535	0	0	0	0	50	36	0	0
광주	731	596	651	537	0	0	30	18	50	41	0	0
대전	796	527	612	397	150	116	34	14	0	0	0	0
울산	150	121	150	121	0	0	0	0	0	0	0	0
세종	48	37	48	37	0	0	0	0	0	0	0	0
경기	1,664	1,457	1,522	1,315	40	36	0	0	102	106	0	0
강원	550	367	485	329	0	0	0	0	30	15	35	23
충북	832	577	772	529	36	34	24	14	0	0	0	0
충남	825	635	795	617	0	0	30	18	0	0	0	0
전북	892	754	792	675	70	65	30	14	0	0	0	0
전남	1,675	1,134	1,575	1,108	70	19	30	7	0	0	0	0
경북	1,121	744	1,121	744	0	0	0	0	0	0	0	0
경남	1,356	927	1,326	916	30	11	0	0	0	0	0	0
제주	288	266	288	266	0	0	0	0	0	0	0	0

2) 보건복지부, 2017 아동복지시설현황(일람표)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성별·취학 현황³⁾

2016. 12. 31현재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 수	종사자 수	정원	수용 인원			아동 현황							
				계	남	여	계	미 취 학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기타
								0~3세	3~6세					
계	510	1,514	3,513	2,758	1,444	1,314	2,758	60	368	878	701	613	101	37
서울	60	171	411	312	147	165	312	9	37	94	66	79	17	10
부산	35	106	244	176	97	79	176	2	15	57	42	48	7	5
대구	15	46	99	80	53	27	80	0	6	32	13	24	3	2
인천	16	48	112	90	47	43	90	3	8	35	20	17	6	1
광주	28	88	195	169	84	85	169	11	39	60	37	18	4	0
대전	17	53	117	101	56	45	101	2	17	28	26	19	7	2
울산	8	23	53	44	35	9	44	0	7	24	5	7	1	0
세종	1	3	7	5	0	5	5	0	0	3	2	0	0	0
경기	129	386	890	741	402	339	741	9	121	237	193	162	11	8
강원	23	71	158	124	46	78	124	3	14	34	38	26	4	5
충북	27	85	188	135	63	72	135	2	11	49	37	31	5	0
충남	25	74	175	126	66	60	126	3	12	34	40	26	10	1
전북	46	131	310	234	115	119	234	3	18	68	77	62	5	1
전남	36	102	251	187	109	78	187	1	20	55	43	54	13	1
경북	13	40	88	70	38	32	70	4	13	24	18	10	1	0
경남	26	71	182	137	78	59	137	8	23	35	40	25	5	1
제주	5	16	33	27	8	19	27	0	7	9	4	5	2	0

3) 보건복지부, 2017 공동생활가정현황(일람표)

Part 02

보호시설 아이들에게 후견인이란?

- I. 후견인제도란 무엇인가요?
- II. 후견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III.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특별법으로



Part 02

보호시설 아이들에게 후견인이란?

I

후견인제도란 무엇인가요?

Q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민아(5세)는 수술이 필요해서 입원을 하려고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시설장으로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시설장이 민아의 후견인이 된다면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소송을 할 때에도 누군가 대신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미성년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고,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해 주는 사람을 '법정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법정대리인인지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부모인 '친권자'이고, 2순위가 부모 이외의 사람이면서 여기서 살펴보려는 '후견인'입니다.

미성년후견이란 친권자에 갈음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위해 충분한 보호와 교양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미성년자의 원만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⁴⁾ 모든 아동들은 만 19세에 이르러 성인이 될 때까지 어른들의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에 따르면 아동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보호·양육의 책임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과 동의권을 갖는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어떤가요?

part 1.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 시내 3천여 명의 아이들이 복지시설에서 생활합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도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보호시설의 시설장님들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올바르게 자라도록 양육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시설장님들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아이에 대한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더라도 아이가 입원이 필요할 경우 동의를 할 수 없고, 통장개설이 필요하다라도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4) 윤진수 · 현소혜, 「2013년 개정민법 해설」, 법무부(2013), 77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자가 아닌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자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후견인제도”입니다.

 잠깐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은 법적인 보호자를 말합니다.

보통 후견인이라 하면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키우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에서 말하는 후견인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아이를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아이를 보호하더라도 법적 보호자인 후견인이 아니면 아이를 대신해서 통장개설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II

후견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후견인의 종류는 ① 민법상 유언에 따른 지정후견인, ② 민법상 선임후견인, ③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있습니다. 보통은 친권자인 부모가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로 진행되지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른 후견인 지정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1. 민법상 유언에 따른 지정후견인이란?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제2항). 후견인은 친권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친권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1차적으로 친권자가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그 방식은 반드시 유언 방식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언은 민법에 규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합니다. 

여기서 유언은 민법상 정해진 유언 방식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침대에서 구두로 유언을 하는 장면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 유언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에서 유효한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5가지 유언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각각의 요건에 맞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까다롭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진위여부를 가리기 힘들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2. 민법상 선임후견인이란?

가정법원은 유언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이거나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2차적으로 선임후견인을 둔 것입니다.

※ 본 매뉴얼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후견인 지정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유언에 의한 후견인 지정과 민법상 후견인 선임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경우 법적인 보호자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호자의 공백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후견인 지정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III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특별법으로

▶ 잠깐 법이 왜 이렇게 복잡하나요?

복지 분야에서 최근의 특징 중 하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시장,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항이 추가되거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기 때문에 복지 분야의 법들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도 그러한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입해서 복잡한 후견인 선임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인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따져보면서 살펴보면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후견인 지정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의 경우 민법상 후견인 선임절차보다 간소한 절차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공백으로 인한 아이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주체가 보호시설의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구분하여 절차를 달리 하고, 또한 고아인 미성년자와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를 구분하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part 3.~ part 6.에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는 절차와 제출서류, 결격사유,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0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I. 아동보호시설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II. 그렇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시설”에는 어떠한 시설들이 있나요?



Part 0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I

아동복지시설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의 시설장입니다. 시설에 2세 아이가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선임신청을 해야만 하는지, 이 법의 적용을 받아 후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후견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공백을 없애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외의 여러 시설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후견인이 필요한 아이들이 아동복지시설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여러 시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시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22일부터는 법률이 개정되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시설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시설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1일 현재 이 법이 적용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	1. 아동양육시설(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①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아동상담소(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위 1.~5.의 시설이 통합된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①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② 공동생활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노숙인복지시설	1. 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재활시설(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숙인요양시설(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청소년복지시설	1.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시설	1. 일반보호시설(피해자에게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따른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하는 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시설	1. 일반지원시설(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지원시설(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Part 0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절차

- I.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 II.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Part 0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절차

▶ 잠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은 후견인이 필요한 미성년자가 고아인지 여부, 보호시설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인지 여부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는지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인지 여부에 따라 국가의 개입 정도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알아보는 후견인 지정절차

미성년자	설치·운영 주체	후견인 지정절차	필요한 서류
고아인 미성년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따로 없음. 법에 따라 시설장이 후견인이 됨.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견인지 정신청서 제출 ② [후견인 지정을 받은 후] 부양의 무자확인공고문 제출 ③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 후견인지정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부양의무자확인공고문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	국가·지방자치단체	①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허가신청 서 제출 ②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부양의무자확인공고문 제출 ③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기타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 • 부양의무자확인공고문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견인지 정신청서 제출 ② [후견인 지정을 받은 후] 가정법원 에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제출 ③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제출 ④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 후견인지정신청서 • 후견인지정서 •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기타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 • 부양의무자확인공고문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Q 현우(15)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청소년쉼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켄터의 시설장이 현우의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데 이 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A 현우는 고아이며, 시립 청소년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지정절차 없이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됩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특별한 지정절차 없이 바로 시설장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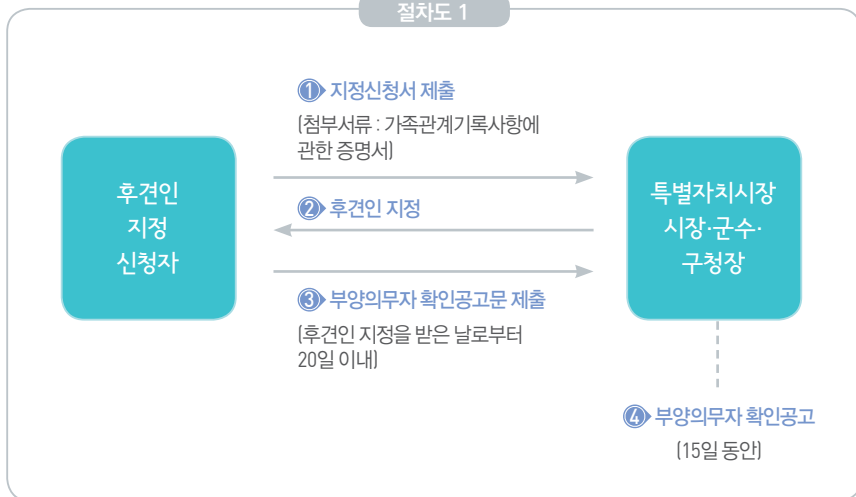


2.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Q 진아(2)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진아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진아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맡기셨습니다. 진아가 생활하는 시설의 시설장이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데, 이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으로 후견인이 되며, 그 후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절차도 1



(1) 후견인지정신청

후견이 필요한 아이가 고아인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후견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울에 있는 시설의 경우 각 구청**이 될 것입니다. 신청권자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때 아이가 고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지정신청서는 원칙적으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신청서 작성 예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미 성 년 자	주 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〇〇〇-〇〇				
	보호시설명	〇〇가정	보 호 경 위	빈곤		
	성 명	김〇〇	성 별	남		
	생 년 월 일	2015년 3 월 10 일생 (2세, 4월)				
후 견 인 지 정 신 청 자	주 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〇〇〇-〇〇				
	직 업	사회복지사	직 장 명	〇〇 가정	직 위	시설장
	성 명	이〇〇	주 민 등 록 번호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후견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7 년 7 월 8 일 신청인 이〇〇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후견인지정

후견인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지 검토한 후 후견인지정서를 발급합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제5조)⁵⁾〉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10.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후견인지정서는 법에서 별도의 양식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상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자세한 내용은 part 5. 참조.

후견인 지정서 작성 예시[법정 서식 없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서						
미 성 년 자	주 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〇〇〇-〇〇				
	보 호 시 설 명	〇〇가정	보 호 경 위	빈곤		
	성 명	김〇〇	성 별	남		
	생 년 월 일	2015년 3 월 10 일생(2세, 4월)				
후 견 인 지 정 신 청 자	주 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〇〇〇-〇〇				
	직 업	사회복지사	직 장 명	〇〇 가정	직 위	시설장
	성 명	이〇〇	주 민 등 록 번 호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2017 년 7 월 15 일 △ △ 구 청 장						

(3)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문 제출

보호시설의 장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고문 2부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고문의 양식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의 장이 확인공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작성 예시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사진 3cm X 4cm
미성년자 인적사항	성명	김○○	성별	남	
			연령	만 2 세	
	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〇〇〇-〇〇			
	특징	하얀 얼굴, 입술 옆에 점이 있음			
부양의무자, 그 밖의 보호자	성명		미성년자 와의 관계		
보호시설	시설명	〇〇가정	대표자	이○○	
	보호개시일	2016년 1 월 3 일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후견인	성명	이○○			
	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〇〇〇-〇〇			
참고사항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하오니 부양의무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 월 1 일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4)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동안**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잠깐 부양의무자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다릅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친권자의 유언에 따라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법원의 선임으로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보다 넓은 의미로, 아이의 조부모, 친척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는 부양의무자에게 아이의 후견인이 지정되었음을 알리고, 아이에게 다른 연고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2조

2. “부양의무자”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민법」 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민법」 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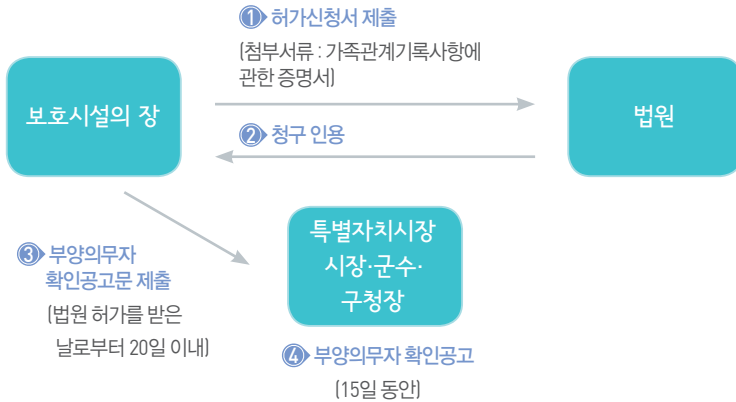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Q 희찬이(10)는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희찬이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셔서 어디에 거주하는지 모르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희찬이 명의의 통장이 있으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싶어도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확인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은행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시설장이 후견인이 되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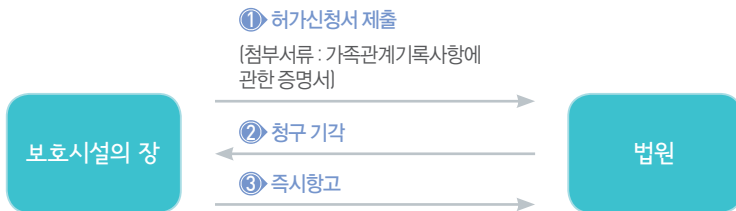
A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해당합니다. 희찬이의 경우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이므로 시설장이 후견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고아인 경우에는 법률에서 보호시설의 장이 바로 후견인이 된다고 규정하였지만, 고아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아가 아니라면 친권자가 있는 상태이므로 고아인 미성년자에 비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절차도 2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1) 법원의 허가

①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법원에 허가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그 **보호시설의 시설장**입니다.

②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보호시설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서류로는 ① **허가신청서**와 ②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 진행 중 법원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서류는 미성년자의 연령, 친권자와의 관계, 보호시설의 형태 등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진행한 사례에서는 추가서류로 미성년자의 동의서, 미성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호시설의 시설현황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허가신청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후견인 지정허가 신청서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허가 신청서 작성 예시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고아 아닌 미성년자	주 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〇〇〇-〇〇				
	보호시설명	〇〇가정	보 호 경 위	빈곤		
	성 명	김〇〇	성 별	남		
	생 년 월 일	2015년 3 월 10 일생 (2세, 5월)				
후 견 인 허 가 신 청 자	주 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〇〇〇-〇〇				
	직 업	사회 복지사	직 장 명	〇〇 시책	직 위	시책장
	성 명	이〇〇	주 민 등 록 번호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지정허가를 신청합니다. 2017 년 8 월 5 일 신청인 이〇〇 (서명 또는 인) 서울가정법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1. 후견인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에게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2.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부					없 음

④ 법원에서 무엇을 심리하나요?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법원에서는 허가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허가를 청구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기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리합니다. 민법상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하는 것 외에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허가를 할 때에는 보통 “**청구인이 사건본인 △△△의 후견인이 되는 것을 허가한다.**”라고 심판을 합니다.

⑤ 불복

법원에서 청구를 허가하지 않고 기각한 때에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즉시항고는 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법률 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란 무엇인가요?

즉시항고란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제소기간이 없는 보통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14일 이내에 항고를 해야만 합니다.

(2)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보호시설의 장은 법원에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고문 2부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고문의 양식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양식(⇒ I .2.(3) 공고문 작성 예시 참조)을 사용합니다.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동안** 공고해야 합니다.

잠깐 후견인이 되고나면 개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후견인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후견인으로 등재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원래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비치된 「후견개시신고서」에 재판서등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무상 법원에서 후견인 등록을 촉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후견개시신고서」 작성 절차를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후견인 선임 결정을 받은 후 아동의 기본증명서 등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기록		신고에 의한 기록	
미성년 후견	(후견인선임심판확정일) 0년 0월 0일	미성년 후견	(후견인선임심판확정일) 0년 0월 0일
	(심판법원) 00가정법원		(심판법원) 00가정법원
	(후견인) 김00		(후견인) 김00
	(후견인 주민번호) 000000-0000000		(후견인 주민번호) 000000-0000000
	(촉탁일) 0년 0월 0일		(후견인 취임일) 0년 0월 0일
	(촉탁법원) 00가정법원		(신고일) 0년 0월 0일
	(처리관서) 000		(신고인) 박00
			(처리관서) 000

2.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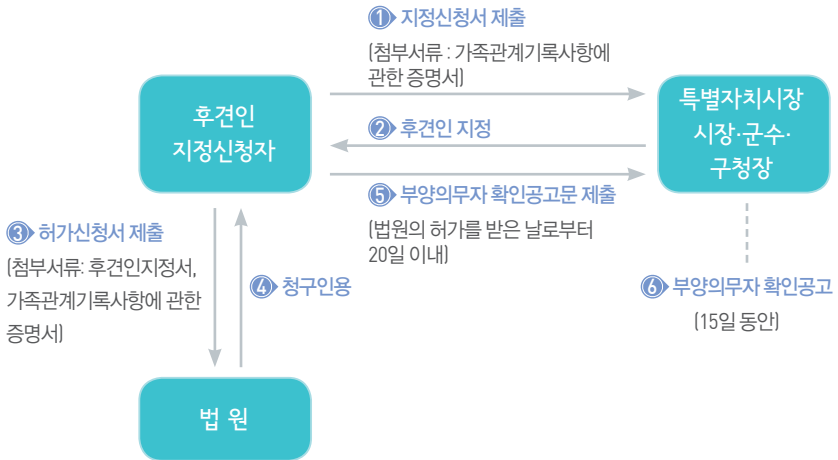
Q 민지(16)는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성매매피해자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민지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계시지만 어려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디에 거주하는지 모릅니다. 시설의 시설장이 민지의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데 이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민지는 친권자인 아버지가 있으므로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성매매피해자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후견인 지정을 받은 후 법원의 허가절차와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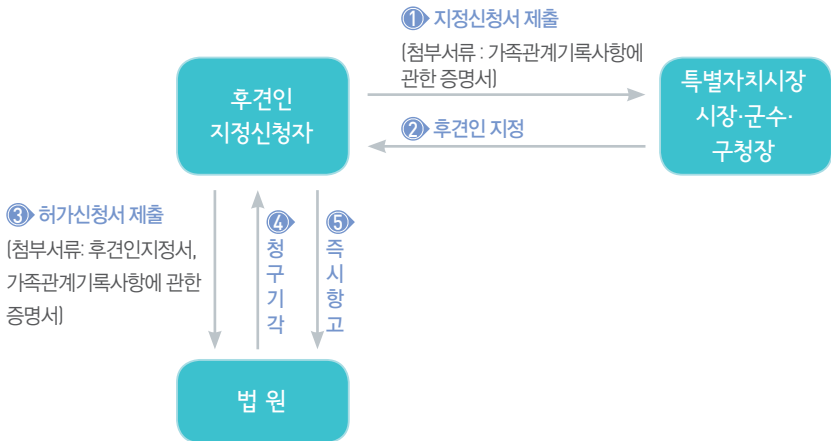


절차도 3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1) 후견인지정신청

후견이 필요한 아이가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먼저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후견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울에 있는 시설의 경우 각 구청**이 될 것입니다. 이 때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지정신청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I . 2.(1) 지정신청서 작성 예시 참조), 후견인지정서는 규정된 양식이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 2.(2) 지정서 작성 예시 참조).

(2) 법원의 허가

①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후견인 지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②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보호시설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허가신청서와 ② 후견인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 진행 중 법원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서류는 미성년자의 연령, 친권자와의 관계, 보호시설의 형태 등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진행한 사례에서는 추가서류로 미성년자의 동의서, 미성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호시설의 시설현황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허가신청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Ⅱ. 1.(1) 지정허가신청서 작성 예시 참조).

④ 법원에서 무엇을 심리하나요?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법원에서는 허가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허가를 청구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기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리합니다. 민법상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하는 것 외에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허가를 할 때에는 보통 “청구인을 사건본인 △△△의 후견인으로 지정함을 허가한다.”라고 심판을 합니다.

법원의 심판문 예시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7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

청 구 인

주소

대리인

사 건 본 인

주소

등록기준지

주 문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함을 허가한다.

이 유

사건본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후견인 지정은 이유 있으므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7. 8. .

⑤ 불복

법원에서 청구를 허가하지 않고 기각한 때에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3)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보호시설의 장은 법원에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고문 2부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고문의 양식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양식을 사용합니다(⇒ I . 2.(3) 공고문 작성 예시 참조).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동안**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시 항 고 장

사 건 20 ㄴ단0000 후견인지정허가
 항 고 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 등록기준지
 주소

20 ㄴ단0000 후견인지정허가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2017. ○.○.
 동 법원에서 선고한 심판에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심판의 표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 심판 정본은 2017. ○.○. 송달받았음)

항 고 취 지

1. 원 심판을 취소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지정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심판서 | 1통 |
| 1. 납부서 | 1통 |

20 . . .
 위 항고인 ○○○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잠깐 미성년자의 의료행위는 반드시 후견인이 동의를 해야만 할까요?

Q1 저는 보호시설의 시설장입니다. 시설에 18세의 학생이 있는데 하교 후 친구들과 놀다 넘어져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마를 봉합하는 수술이 필요한데 저는 후견인지정을 받지 않아 법정대리인이 아닙니다. 제가 수술에 동의를 해도 되나요?

A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동의권자가 누구인가이고, 둘째는 의료행위로 인해 치료비채권이 발생하는 의료계약의 체결권자가 누구인가입니다. 후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의료계약도 재산적인 법률행위인 이상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체결해야 정당한 의료비 채권채무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전자인데, 이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입니다. 의료행위를 하면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힐 수밖에 없는데 누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상해죄가 되지 않느냐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설사 친권자가 동의권자이더라도, 친권자가 동의하면 미성년자는 언제든지 임상실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자의 문제는 미성년뿐만 아니라 성년의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서 여러 논문의 주제가 될 만큼 일관된 판단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의 위험성이나 효과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승낙을 할 수 있을만한 판단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가 독자적인 동의권자라고 보고, 스스로 판단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동의권자라고 봅니다. 판단능력은 미성년자의 나이 등으로 일관되게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미성년자의 이해능력, 수술의 위험성, 수술의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의사의 설명의무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의사에게는 환자에게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 위험성 등을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환자가 판단능력이 없어 법정대리인이 동의권자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⁶⁾

사안에서 환자가 18세로서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할 능력이 있다면, 이마의 찢어진 부분을 봉합하는 수술은 통상적으로 큰 수술이 아니므로 아이 스스로 승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병원에서 시설장의 동의를 받는 이유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료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2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6세의 아동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하여 빨리 수술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 후견인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A 수술을 받는 환자가 6세 아동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를 이해한 다음 승낙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험한 응급상황이므로 특별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위급한 상태의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와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환자의 승낙없이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정대리인이 동행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생명이 위험한 응급상황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아니라도 동행한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6) 설명의무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판결].



▶▶▶ 잠깐 후견인이 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하여 모든 대리권을 갖게 되나요?

Q 저는 보호시설의 시설장으로 한 아이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땅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후견인은 친권자에 갈음하는 지위이므로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상 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집니다.

다만,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후견인과 피후견인인 아이와의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후견인 뿐만 아니라 부모인 친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이의 재산을 후견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후견인을 위해 돈을 빌리면서 아이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등 후견인과 아이 사이에 이해가 상반될 수 있는 행위에 있어서는 후견인 본인이 아이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Part 05

후견인의 결격사유



Part 05

후견인의 결격사유

Q 저는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의 후견인이 되려고 법원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회생절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법은 후견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개시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기에 급급한 사람이 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후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후견인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는 위치에 있으므로 타인의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타인의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후견인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이며,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경제문제에 급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형기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형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민법 제924조),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민법 제924조의2),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민법 제925조)를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는 사람을 말합니다.⁷⁾ 이 경우 제대로 후견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과거에 소송을 하였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람은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해가 대립된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공정한 업무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혈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⁸⁾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직계혈족이란 자녀, 손자 등의 직계비속과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을 의미하며, 형제, 자매 등은 방계혈족으로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1.~9.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후견인 지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김효석, 「친권과 미성년후견의 실무」, 박송(2015), 110면

8)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제11판)」, 법문사(2013), 454면

Part 06

후견인의 지정취소

- I.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 II.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Part 06

후견인의 지정취소

Q 저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한 아이의 후견인입니다. 이 아이의 경우 아버지가 계시지만 해외에서 일을 하시는 중이라 아이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귀국을 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어 아이가 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후견인 지정허가의 취소청구를 하면 됩니다. 아이가 고아가 아니므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지정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후 후견인 결격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후견인 지정을 허가한 가정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무가 종료한 때란 **피후견인의 부양의무자가 나타나서 피후견인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게 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장이 퇴직하게 된 경우** 등을 가리킵니다.

I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아이가 고아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으로 후견인이 되었으므로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 지정을 취소합니다.

II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1. 후견인 지정허가의 취소

아이가 고아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후견인 지정허가를 통해 후견인이 되었으므로 법원에 후견인 지정허가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2. 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미성년자가 있는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권자입니다.

3. 어디에 청구를 하나요?

후견인 지정을 허가한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허가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4. 심리 및 심판

후견인 지정허가의 취소에는 허가가 취소되는 후견인을 절차에 참가시켜야 합니다. 또한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그 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7조(후견인의 지정취소 등)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 하거나 해당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가사소송규칙」 제27조(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65조(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변경)

②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67조(즉시항고)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이 규칙 제2조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시행일 2013.7.1]

1.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심판: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변경 대상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3.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허가,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친권자의 지정 심판: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5. 미성년후견종료 및 친권자 지정 심판: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 지정허가 취소청구

관련 사건번호 2014느단○○호

청 구 인 ○○구청장

상 대 방(후견인) ○○○

사건본인 ○○○

청 구 취 지

상대방 ○○○를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한 후견인 지정허가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상대방은 ○○시설의 시설장으로서 2014. △.△. 후견인 지정을 받았으며, 2014. △.△.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지정허가를 받았습니다.
2. 그런데 사건본인 ○○○의 친부가 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자 하여, 사건본인은 위 시설에서 퇴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시설의 시설장인 상대방 ○○○를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한 후견인 지정허가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잠깐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친권자인 모(母)가 있는 상황에서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모가 이혼한 후 아이의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아이의 할아버지가 후견인선임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친권자인 어머니가 재혼하여 출산을 하였으며, 할아버지가 계속 양육을 하고 있어 친권자에게 아이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고, 아이가 다른 형제와 함께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15. 6. 3. 2014느단513 심판]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어머니가 아동의 입양을 추진하여 미국 국적 부부에게 아동이 인도되었으나 비자문제 등으로 아동의 입국이 불허된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의 어머니를 상대로 아동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위해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아동의 후견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 2. 22. 2012느합356 심판]

»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사례**

최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진행한 사례로서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의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시설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7. 8. 30. 2017느단51119 심판]

Part 07

친권의 제한·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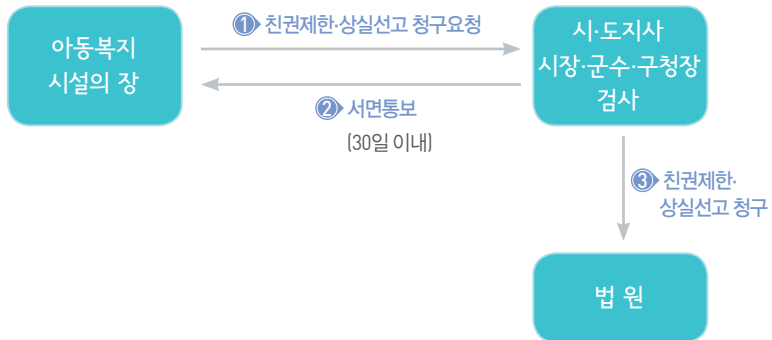


Part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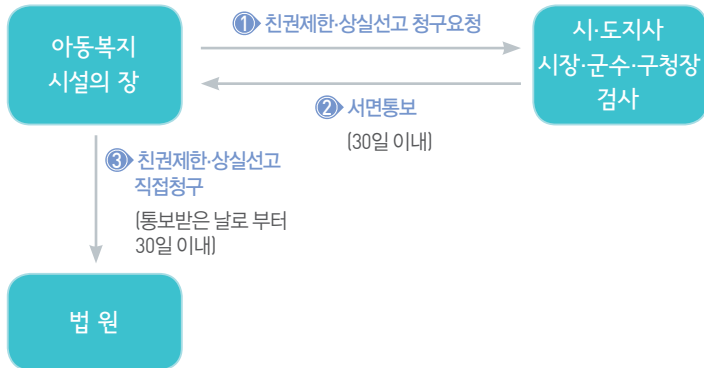
친권의 제한·상실

절차도 4

지방자치단체장의 친권 제한·상실신고 청구 결정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친권 제한·상실신고 미청구 결정시



Q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현수(12세)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달 수급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모르는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수급비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현수의 수급비를 가져갑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는 없나요?

A 이러한 경우 현수의 아버지가 친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에게 아버지의 친권을 제한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청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친권 제한·상실청구가 왜 필요할까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친권자인 부모가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친권자인 부모가 오히려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갖기 때문에 자녀를 부모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에서도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12조).

그런데 만약 위의 사례처럼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친권을 행사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민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친권에 대한 제한·상실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어떠한 경우 친권 제한·상실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잠깐** 친권에 대한 제한·상실 청구는 민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권자나 신청대상 아동, 신청사유 등이 제각기 다릅니다. 기본이 되는 민법에서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 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장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친권자인 부모가 있으나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1) 친권의 남용이란 무엇인가요?

친권의 남용이란 친권을 자녀의 복리실현에 현저하게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자녀의 취학거부, 친권자의 이익을 위한 자녀의 재산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⁹⁾

9) 송덕수, 「친족상속법」, 2016, 217면.



▶▶▶ 잠깐 구체적 친권남용에는 어떠한 행위들이 있을까요?

- 자녀의 재산을 친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는 것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가혹한 징계를 가하는 것
- 부적당한 거소를 지정하는 것
- 자녀의 재산을 무상 또는 매우 싼 값으로 부당히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부당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
-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녀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¹⁰⁾

(2) 현저한 비행이란 무엇인가요?

친권자의 행위가 자녀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방탕, 도박의 상습, 범법행위의 반복, 문란한 성생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단독친권자의 행방불명이나 생사불명, 중병·정신병에 의한 장기입원, 복역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행사를 게을리 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녀를 보호·양육하지 아니하고 재산관리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등 자녀의 양육이나 재산관리를 맡기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2010, 559면.



관련법률 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등)

-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16.9.23]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2016.9.23]

3. 청구의 요청

(1)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친권제한·상실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잠깐 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학교의 장”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과는 달리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보호시설의 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아동은 18세 미만이므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친권 제한·상실에 관하여는 민법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의 청구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가 일정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러한 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보호사건 즉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여러 가지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요청의 상대방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요청의 내용

친권의 제한 및 상실에 대하여 법원에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4년 민법의 개정으로 친권의 일시정지, 친권의 일부제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친권의 일시정지는 굳이 친권자의 친권을 영원히 박탈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충분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일부제한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8조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의 일시정지의 신고, 민법 제924조의 2의 친권의 일부제한의 신고가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바,¹¹⁾ 아동복지법상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친권행사의 제한 내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요청의 형식

요청의 형식에 대해서는 법정된 양식이 없으므로 자유양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제한·상실신고 청구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친권을 제한·상실할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증명자료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11) 제철웅, 개정 미성년후견제도의 입법상의문제점에 대한 반성, 법학논총, 2016, 421면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8조의 친권제한과 상실은 개정 전 민법의 친권상실,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의 청구여부 결정

(1) 아동의 의견 존중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요청을 받아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2) 서면통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상의 서식에 따릅니다.

5. 친권상실·제한의 직접청구

(1) 요건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직접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결과통보 작성 예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결과 통보				
제 호				2017 년 8 월 10 일
수 신	○○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u>아동복지시설</u> · 학교)의 장			
발 신	☐ ○○지방검찰청○○지청 ☐ ○○시·도 ☒ ○○시·군·구 (전화번호: 00-000-0000)		☐ 검사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 인
「아동복지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청구인	성명	이□□	생년월일	19○○.○.○
	주 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		
	관련 아동과의 관계	아동이 입소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2. 관련 아동	성명	김○○	생년월일	2010. 3. 10.
	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		
3. 처리 결과	귀 시설의 요청에 따라 사안에 대한 심사 결과 친권자인 부(父) 김□□는 이 사건 아동이 귀 시설에 입소한 후 전혀 아동을 통보지 않고 있음이 인정됨. 최근 친권자 김□□가 4개월에 걸쳐 주말마다 아동을 찾아왔으며, 수차례 본인의 집에 데려갔으나 아동에 대한 폭행 및 폭언이 심하고, 이에 대한 신고내역 등도 존재하는바, 이는 친권을 남용하고 아동을 학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선고청구를 하기로 결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m²]

친권상실신고 심판청구 작성 예시

친권 상실신고 심판청구

청 구 인 ○○구청장

상 대 방(친권자) ○○○

사건본인 ○○○

청 구 취 지

상대방 ○○○은 사건본인 ○○○에 대하여 친권을 상실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상대방 ○○○은 사건본인의 친부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2살 무렵 가출을 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조부모의 손에 자라다 2013. △△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2. 최근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찾아와 주말에 집에 데려갔으나 사건본인에 대한 폭행 및 폭언이 심하여 사건본인은 상대방에 대한 공포심이 심한 상태입니다.
3. 이에 △△시설의 시설장의 친권 상실청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친권상실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 . . .
○○○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 잠깐 법원에서 친권을 제한·상실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양을 전혀 하지 않는 친모(親母)에 대하여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

법원은 남편 등과의 불화로 집을 나가 별거한 이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 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 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641 판결)



아동의 재산을 처분한 친모(親母)에 대하여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

법원은 친권자인 어머니가 아동의 통장과 인감을 분실신고하고 남아있던 예금을 다 찾아가 버렸으며, 아동 명의의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기 위해 제3자에게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본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친권자인 어머니의 친권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9. 1. 5. 선고 2008느단2630 판결)



검사가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親父)에 대하여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한 사례

친권자인 아버지가 만 8세인 친딸을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술에 취해 친딸을 폭행하기도 한 사안에서 검사가 친권상실의 심 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아버지가 친딸을 위하여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 친권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느합6 판결)

» 자신이 양육하던 다른 입양아를 확대한 양모(養母)에 대하여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

입양아 A에 대한 양모B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B가 자신이 양육하던 또 다른 입양아 C를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구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확대한 점, 그러한 행위 등으로 B가 유죄판결을 받아 앞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특히 A가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B는 A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형편인 점에 비추어보면 B가 A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 B의 A에 대한 친권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노합5 판결]



Q 아동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친권상실청구심판시까지 몇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이에는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이러한 경우 사전처분으로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친권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권상실 심판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친모(親母)에게 버림받은 난치병 영아가 폐렴 등으로 치료가 시급하자 “친권상실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친모의) 친권행사를 정지한다”고 사전처분 결정을 하고 친권 대행자로 시설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Part 08

향후 개선 과제



Part 08

향후 개선 과제

앞에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에 관한 지정절차와 아동복지법상 친권의 제한·상실에 관한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보호시설의 경우 보호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법과 별개로 「보호 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나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 하여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 동안 보호시설의 경우 후견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현실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아이들에게 법적인 보호울타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친권제한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시설장이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었다면 아이의 친권자의 친권은 제한될까요? 위 법에 따른 후견인이 되는 절차와 친권 제한·상실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후견인이 될 자가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부양의무자 공고를 거쳐 후견인이 됩니다. 이 때 법원의 허가로 후견인이 되면 친권자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친권을 제한·상실하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법에 따른 후견인지정과 친권제한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2. 후견인 지정시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보호시설의 경우 많은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후견인 지정시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십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민법상 후견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에게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거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후견인의 역할 범위를 한정하거나 친권자의 부재가 예상되는 기간으로 후견인의 지정기간을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 지정시 후견인의 권한, 기간, 책임의 범위 등을 명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아도 후견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미성년자가 고아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정으로 후견인이 됩니다. 그러나 후견인지정서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 된 자는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정후견인을 소명하는 자료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¹²⁾ 그러나

.....
12) 제80조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 ①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법원의 재판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할구청장의 후견인지정서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통장개설 등에 있어서도 법원의 서류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하여 결국 민법상 후견인선임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¹³⁾ 결국 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아도 현실적으로는 후견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4. 고아인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의 경우 입법목적과 모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관할구청장의 지정서만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들어 현실적으로 입법목적과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고아인 미성년자에 비하여 후견인이 되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심판서로 일상생활에서 법률행위의 대리가 가능한 반면,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후견인지정서로서 법률행위의 대리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시설의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으로 후견인이 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인 공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후견인지정서 양식도 법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처리가 요청됩니다.

.....
1.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전문개정 2013.7.30]

13) 실제로 고아인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서를 받은 후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거쳤음에도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민법상 후견인 선임심판을 위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찾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점차 복지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은 후견인지정과 법원에의 후견인지정허가취소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은 보호시설 아동에 대한 친권 제한·상실 청구여부 결정 및 법원에의 친권 제한·상실 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으며, 복지분야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법적인 보호울타리가 필요함에도 보호자의 공백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록

각종 서식 및
관련 법령



각종 서식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미 성 년 자	주 소					
	보호시설명		보 호 경 위			
	성 명		성 별	남·여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세, 월)				
후 견 인 지 정 신 청 자	주 소					
	직 업		직 장 명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후견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서

미 성 년 자	주 소					
	보 호 시 설 명		보 호 경 위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후 견 인 지 정 신 청 자	주 소					
	직 업		직 장 명		직 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고 아 아 닌 미 성 년 자	주 소					
	보 호 시 설 명		보 호 경 위			
	성 명		성 별	남 · 여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세, 월)				
후 견 인 허 가 신 청 자	주 소					
	직 업		직 장 명		직 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지정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1. 후견인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에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2.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부					없 음

88 · 서울시복지재단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사진 3cm × 4cm
미성년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남 · 여	
			연령	세	
	주소				
	특징				
부양의무자, 그 밖의 보호자	성명		미성년자 와의 관계		
보호시설	시설명		대표자		
	보호개시일	년 월 일	소재지		
후견인	성명				
	주소				
참고사항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하오니 부양의무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 × 297mm [백상지 80g/㎡ (재활용품)]

미성년①후견②후견감독

개 시 신 고 서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성 명	한글 (성) / (성)	한자 (성) / (성)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 생 연 월 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성)	한자 (성) / (성)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 생 연 월 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성)	한자 (성) / (성)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 생 연 월 일
② 신 고 인	성 명	한글 (성) / (성)	②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성)	출 생 연 월 일			
	자 격	①후견인 ②후견감독인 ③후견인임무대행자			
	등록기준지				전 화
	주 소				이 메 일
③개시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④취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①지정 ②선정 ③법정			
⑤심 판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⑥기 타 사 항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대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2명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미성년후견후견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 : 개시일자 및 원인은 2013. 7. 17. 친권자의 사망(상실), 2013. 7. 17. 친권자행방불명 등으로 기재합니다.
 ④란 : 지정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개시원인이 발생한 날(친권자의 사망, 상실등)을 기재합니다.
 :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취임연월일은 선임심판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 심판일자란은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⑥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⑦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독음을 기재한 서면 1부(유언에 의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 제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법원이 제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 제판서 등본 1부(법원이 제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합니다.
-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 청구 결과 통보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학교)의 장		
발 신	☐ ○○지방검찰청○○지청 ☐ ○○시·도 ☐ ○○시·군·구 (전화번호: 00-000-0000)	☐ 검사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인

「아동복지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관련 아동과의 관계			
2. 관련 아동	성명		생년월일	
	주소			
3. 처리 결과				

210mm×297mm[백상지 80g/m²]

관련법령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95호 일부개정 2017. 03. 21.]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後見人)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16.5.29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7.3.21] [[시행일 2017.6.22]]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 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 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 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 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 “부양의무자”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조(후견인)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① 보호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른 후견인 지정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의 장이 확인 공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1. 「민법」 제9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2.10.22]

제6조(후견인의 직무)

제3조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피후견인(被後見人)의 입양에 관한 직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7조(후견인의 지정취소 등)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부칙[2002.12.18. (모 · 부자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 · 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제7조의 ②항 내지 ⑥항 생략

부칙[2006.12.28 제8119호(모 · 부자복지법)]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

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부칙[2007.4.11 제83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④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2011.3.30 제1051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②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2.10.22 제1151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399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

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⑨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69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3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4. 11. 19.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변경)]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 ①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후견인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①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날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고문 2부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19]

부칙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 지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3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3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7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7 아동복지시설현황(일람표)
보건복지부, 2017 공동생활가정현황(일람표)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제11판), 법문사, 2013
김효석, 친권과 미성년후견의 실무, 벽송, 201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 2010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6
윤진수·현소혜, 2013년 개정민법 해설, 법무부, 2013
이경은, UN아동권리협약상 아동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법리와
한국의 아동보호 법제, 입법과 정책, 2016
이석배, 의료행위와 대리 승낙, 의료법학, 2014
제철웅, 개정 미성년후견제도의 입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법학논총, 2016
제철웅·장영인, 아동보호를 위한 미성년후견제도의 활용방안: 독일 청소년청의
후견·보좌·보조 역할수행의 시사점, 법학논총, 2016

자문위원

김우현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센터장
이효순 관악구청 아동청소년팀 주무관
김금란 아동공동생활가정 민들레쉼터 시설장
송유진 아동공동생활가정 오디가정 시설장
신은경 아동공동생활가정 서초꿈 사회복지사
정경희 아동공동생활가정 행복우리집 사회복지사

집필진

백주원 변호사(책임집필), 이상훈 변호사

선임 매뉴얼

규제 영향 일지 | 2017. 11. 10

발행인 | 남기철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팩 스 | 02-6353-0459

디자인/인쇄 | 스쿨프린팅그룹(주)

I S B N | 978-89-6298-453-8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8층

Tel **1670-0121** H **swlc.welfare.seoul.kr**

비매입/무료

93330



ISBN 978-89-6298-453-8

*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합니다.